

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인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792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3년 6월 28일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신설조항 내 ‘올바른 관광산업을 확립’ 한다는 개념이 모호하여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다양할 수 있어 중앙정부 및 자치구 등과의 협력 규정 신설 시 조항을 구체화시키고자 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가. 시장은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, 자치구 등과 협력하도록 수정함 (안 제4조제4항).

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시장은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, 자치구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.

< 수정안 조문대비표 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시장은 중앙정부 및 자치구 등과 협력하여 올바른 관광산업을 확립하고, 이에 필요한 관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u>	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시장은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, 자치구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.</u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장은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, 자치구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·구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③ (현행 과 같음) <u><신 설></u>	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③ (현행 과 같음) <u>④ 시장은 관광산업 발전과 관 광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 우 중앙정부, 자치구 등과 협력 하여야 한다.</u>